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5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28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자치구의 협력·지원이 중요하므로,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자치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6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유관기관과”를 “서울특별시경찰청,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”로 한다.

**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〈 수정안 조문대비표 〉**

현 행	일 부 개 정 안	수 정 안
<p>< 신 설 ></p>	<p><u>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</u></p> <p>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<u>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<u>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·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서울특별시경찰청,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6조(비밀 준수의 의무)</u> (생략)</p>	<p><u>제7조(비밀 준수의 의무)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</p>	<p>제7조(비밀 준수의 의무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7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</p>	<p><u>제8조(시행규칙)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</p>	<p>제8조(시행규칙)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,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·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